

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

학생 규정

제정 2025.07.02.

목 차

제1장 총칙

명칭 | 목적 | 학생 | 권리 및 의무 | 개정 | 하위 규정

부칙

제1장 총칙

제1조 명칭

본 규정은 '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학생 규정'이라 하며, 그 권위는 본교 재학생으로부터 나온다.

제2조 목적

본 규정은 학생이 주체가 되어 자율적 공동체를 운영하며, 민주적 참여와 책임 의식을 기르고, 모든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고 상호 존중의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 학생

본 규정에서 '학생'의 정의는 「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학교생활규정」의 정의를 따른다.

제4조 권리 및 의무

1. 학생은 학생자치회 및 대의원회 운영 전반을 알 권리가 있다.
2. 학생은 학생자치회 및 대의원회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.
3. 학생은 학생자치회 및 대의원회의 민주적 의결 사항을 따라야 한다.
4. 학생은 학생 규정과 그 하위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.
5. 학생은 학생자치회 및 대의원회의 기능을 실현하고 다른 학생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.

제5조 개정

1. 본 규정의 개정은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대의원회에 발의할 수 있다.
 1. 학생회장단의 발의
 2. 학생자치회 임원 $\frac{2}{3}$ 초과의 발의
 3. 학생회장단을 제외한 대의원회 임원 $\frac{1}{3}$ 초과의 발의
2. 발의된 학생 규정의 개정은 「대의원회 규정」 제3장 제18조, 제19조를 따라 심의 및 의결한다.

제6조 하위 규정

본 규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, 본 규정의 하위 규정으로 「학생자치회 규정」과 「대의원회 규정」을 둔다. 하위 규정은 상위 규정인 본 학생 규정의 원칙과 정신에 부합해야 하며, 반하지 않아야 한다.

부칙

1. 본 규정은 2025년 8월 18일부터 그 효력을 발휘한다.